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3624    |
| 의 퇴 인  | 김위상 의원     |
| 회 답 일  | 2026.1.28. |
| 추 계 번호 | 25B5611    |

#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, ‘안전활동 수준평가’를 지방공사·지방공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억 7,0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8억 4,800만원(연평균 11억 7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 합계    | 연평균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추가재정소요 | 1,170 | 1,170 | 1,170 | 1,170 | 1,170 | 5,848 | 1,170 |

주: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행 ‘안전활동 수준평가’의 대상기관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 중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장래에 발생할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4조(정부의 책무)                       |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짐(제1항)<br>4. 사업주의 <u>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</u> 을 위한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2  | 안 제8조의2(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등) 신설 |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<br>1. 사업의 안전·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<br>2.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의 향상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   |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함(제2항)<br>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<br>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 | 의무규정    |
|    |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함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·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|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야 함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  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4조(정부의 책무) | ○    | • 비용추계<br>－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  | 안 제8조의2(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등) 신설 | ○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용추계(제1항 및 제2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사사례 등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대상(제3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미대상(제4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안 제8조의2제1항)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의 안전·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또는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의 향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시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장래에 마련할 시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, 본 추계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산업 안전

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

- 연구용역 비용은 2024년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(4,200만원)을 준용하여 산출
-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 | 42   | 42   | 42   | 42   | 42   | 210 |

주: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의2제2항)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<sup>1)</sup>

○ 고용노동부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「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」를 규정하여 매년 공공기관<sup>2)</sup>을 대상으로 ‘안전활동 수준평가’를 시행<sup>3)</sup>하고 있음<sup>4)</sup>

- 사업개요: 공공기관의 안전보건 활동을 경영체제, 관리, 활동, 성과 등 4개 분야로 평가하고,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
- 평가주체: 고용노동부, 산업안전보건공단
- 평가대상: 정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 기타 공공기관
- 사업비: 업종별재해예방 사업<sup>5)</sup>과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사업<sup>6)</sup>에 구분되어

1) 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.

4.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

2) 「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」
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"공공기관"이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한다.

3) 「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」

제4조(평가계획의 수립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·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4) 사업명: 업종별재해예방(4152-350)

5) 코드: 4152-350

6) 코드: 4152-355

편성되어 있으며, 각각 산업안전공단과 고용노동부 사용 예산으로 2024년 기준 약 12억원이 집행되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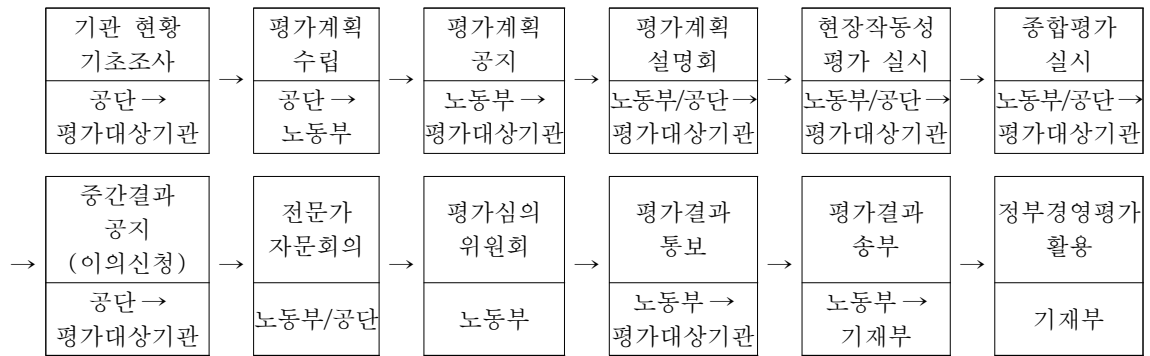
[표 5]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관련 재정지출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| 2020 | 2021 | 2022  | 2023  | 2024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재정지출액 | 841  | 951  | 1,035 | 1,029 | 1,221 |

자료: 고용노동부

[표 6]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사업절차



자료: 고용노동부

□ 개정안은 ‘안전활동 수준평가’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평가대상을 지방공사·지방공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<sup>7)</sup>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‘안전활동 수준평가’의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발생하며, 대상기관의 수에 사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
- (대상기관)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‘안전활동 수준평가’ 대상기관은 지방공사·지방공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이므로, 현 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의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기 곤란함

7) 안 제8조의2(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등)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(이하 이 조에서 “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활동 수준 평가”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공기업

- 다만, 본 추계서는 현행 ‘안전활동 수준평가’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안전관리 등급제 대상 기타 공공기관에 한하여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공사·지방공단 중 2026년 기준 「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」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기관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
- 추계기간 동안 대상기관의 수는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[표 7]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 지방공기업

| 평가유형 | 합계  | 도시철도 | 도시개발 | 특정<br>공사·공단 | 관광공사 | 시설관리<br>공사·공단 | 환경시설관리<br>공사·공단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광역   | 47  | 6    | 15   | 8           | 7    | 5             | 6               |
| 기초   | 117 | —    | —    | 10          | —    | 95            | 12              |
| 합계   | 164 | 6    | 15   | 18          | 7    | 100           | 18              |

자료: 고용노동부

○ (사업단가) 6,875천원<sup>8)</sup>

-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산출하며, 출장여비, 평가위원 위촉수당, 업무추진비, 운영경비 등이 포함됨

[표 8] 안전활동 수준평가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개, 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대상 기관 수(A)             | 164   | 164   | 164   | 164   | 164   |
| 사업단가(B)                | 687.5 | 687.5 | 687.5 | 687.5 | 687.5 |
| 추가재정소요<br>(C=A×B, 백만원) | 1,128 | 1,128 | 1,128 | 1,128 | 1,128 |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(추정치)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<br>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(A) | 42    | 42    | 42    | 42    | 42    |
| 안전활동 수준평가(B)                       | 1,128 | 1,128 | 1,128 | 1,128 | 1,128 |
| 합계(C=A+B)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170 | 1,170 | 1,170 | 1,170 | 1,170 |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V. 부대의견

8) 자료: 고용노동부

□ 본 추계 결과는 현행 ‘안전활동 수준평가’의 대상기관을 고려하여 지방 공기업 중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장래에 발생할 평가대상 기관의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- 사업주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, 연구용역 시행 여부 및 시행 주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경제비용추계과 | 남 희 | 김신애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|
| 남 희 | 02-6788-3737 | nhee@nabo.go.kr |